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40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박홍배·김종민·이성윤

김문수・박용갑・박 정

이용우 • 박해철 • 김태선

이수진 · 서미화 · 김남근

강준현 · 김한규 · 박정현

조승래 · 김정호 · 박지원

김우영 • 백승아 • 정태호

서영석 • 한민수 • 이정헌

민병덕 • 전용기 • 신영대

정준호 · 김태년 의원

(29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지급액이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규정된 월 50만원으로, 물가변동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계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직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 15조, 제19조 및 제20조).

법률 제 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고용정책심의회의"를 "매년 고용정책심의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해당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 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수준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후 구직촉진수당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	사후관리) ①
원서비스 중 제12조부터 제14	
조까지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	
다)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	
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	
부터 <u>1년</u> 이 되는 날까지로 한	<u>2년</u>
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동부장관은 <u>고용정책심의회의</u>	<u>매년 고용정책심의</u>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u>회의</u>
지급액을 결정한다.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②
월(月) 단위로 정한다. <u><후단</u>	
<u>신설></u>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에
	따른 해당 연도 1인 가구 생계
	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u>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
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
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
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
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
다. <단서 신설>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 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인 취업지원 신청인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 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